

2019년 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9. 6. 25.(화) 10:00~12: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21명 ※ 대리참석 6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민형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조양래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헌규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부장 박지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양철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행정연구원 경영부원장 안혁근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김영길(代)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최문석(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 부장 오상호(代)	한국윤리경영학회 기업윤리교육위원장 조창훈(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성현(代)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정현(代)
	◦ 불참위원 : 7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영수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심재승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	
	◦ 지역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공정신뢰 분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 실행위원 이재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영이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한유나	
	◦ 총괄분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공영제추진팀장 구의청			
보고 안건		◦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안내 ◦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 경과			
심의 안건		◦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제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협의체와 의견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관 상임위에 배치하는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제안에 명시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있으면 추가해야 함 - 지방자치법상 겸직의 문제가 되는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경우로 겸직 금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경우를 추가해야 함 - 겸직신고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후보자 등록 시에 겸직에 관한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공개하도록 한 다음, 미신고 시 처벌 받도록 해야 함 - 겸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이해가 충돌하고 공익이 훼손될 경우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신고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공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구체적으로 겸직이 많아서 문제인지, 겸직 신고를 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함			

회의명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 활성화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 이와 관련하여 지멘스가 공익신고 시스템을 잘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임 - 공익제보를 하고 난 이후 우회적인 보복 방법으로 사소한 잘못을 누적 징계하여 파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있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기관장, 임원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공익신고가 발생할 경우 공시 사항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익신고자 기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포상금 외에도 공익신고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함 - 제목과 달리 제안에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가 혼용되어 있는데, 명확한 구분이나 전제를 넣어야 혼동이 없을 것임 - 공익신고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함.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직이 신고대행을 해야 함 - 공익신고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익신고 교육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중복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함 ◦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